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19. 9. 11.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5호

제출연월일: 2019. 9. 11. 제 출 자: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이 통보되었기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 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안 제4조2)
-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 8. 9. ~ 2019. 8.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사회재난과(041-635-328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을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으로, "확정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으로,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 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을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을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으로,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를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을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으로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샹	1 5	경
입	안 전	[총괄:	과장	박	7]	연
아	안 전	[관리]	팀장	주	성	철
자	담	당	자	김 (041	태 -746-6	휘 (424)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즉	즉의 작성방법을 읽고	사[외 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단 씌이]에는 해당되는 곳	_			(앞쪽)
접수번		접수일			처리기간		(並 ¬)
 1. 신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	 기타()	
··-	 성명			<u>- 기 </u>	1 1		
	주소			휴대전화번호	-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	 루되는 사항은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주민등록번호		_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	주) [], 세입자	- [], 공공]
연락:	휴대전화 처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 .	네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u> </u>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그등학생 수	() 고등	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	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	일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可	해내용						
피	해발생 일시						
피	해발생 장소						
	٨١٦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	도:	, 치료기관명	ļ:)
인명 피해	신고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1 - 11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d[]/폐업[]/실	실직[])
	시설명	1	2	3		4	
	총면적(소유+임차)	1	2	3		4	
	면허·허가· 등록 번호	1	2	3		4	
시설	피해 신고	1	2	3		4	
피해	물량 확정	1	2	3		4	
	피해 구분	1	2	3		4)	
	피해 원인	1	2	3		4	
	융자신청 여부	[]	[]]]	[]	
4. 확 [°]	 인사항			,			
 동일/	네대 신고 여부	여 [] , 부 []	내용:				
타	시・군・구 해신고 여부	여 [] , 부 []	내용:				
ΓĘ	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 관한 조례」 저	6조에 따라 생후	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한	하여 우
와 같	이 신고합니다.					년 월	잍
			신고	1인:			또는 인
누	사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논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논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수령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 지출원인행위 지출 요청(회계부서)

지급

□ 신·구조문대비표

했 혅 개 정 아 제3조(지원 결정) ① 논산시장(이 제3조(지원 결정) ① --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 조제1항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 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 "라 한다)가 구성 · 운영된 사회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 조제2항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 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 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 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 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 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 ----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 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 .---- 피해주민 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u>피해</u> 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 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의 생 계 안정을 <u>위한</u>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지원금액 등의</u>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u>확정한</u>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u>산정기준</u>,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u><신 설></u>

②
<i>─</i>
제4조 <u>(지원 기준)</u> ①
피해주민
<u>위하여</u>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
료비 지원 「 (취체 제4호이 가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u>지원 금액 등 기</u>
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u>산정기준</u>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금

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 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 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 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 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 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 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 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 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 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 제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사회재</u> <u>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u>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7 ① <u>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u>재난피해자</u>로부

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 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 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재난피</u> <u>해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 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u>원인제공자</u>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u>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
<u>안정지원 등"</u> <u>피해주민으</u>
② <u>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u> <u>피해주민은</u>
③ <u>피해주민</u> <u>이</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조제 6항에 따라 <u>재난피해자</u>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u>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u>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수 없는 경우에는 <u>재난피해자의</u>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5 -			
피해주	민이		
			피해주
<u>민의</u> -			
<u>6</u>			
		새 하아?	지원 등-
		<u> 78일 인 78</u>	3시전 5
	⊐ n] n] \		
제8조(지			
	<u> 기해수민</u>	 <u>-</u>	
<u></u>	<u>디해주민</u>	명의의	금융회
<u>사등</u>			
금융회	사등을	말한다)	의
		্যা	해주민
			11 6

붙임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논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예측 및 피해수습을 위한 비용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비용은 피해 규모·범위·재난의 유형 등 유동적이며, 발생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박기연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는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 에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 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

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는 그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정부중요시설 사고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 정한다)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조수(潮水)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별표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참고 2

표준조례안

○○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결정) ①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 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 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시·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 5. 그 밖에 시·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 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아니한다.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 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 를 받아 실시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10조(지급방법) 시장·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시장·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공공정보 모니터링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심리지원 장례지원 등